

대구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325808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32580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1461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지연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11. 20.

판결 선고 2024. 12. 1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146144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선정자 C은 34,615,384원,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는 각 23,076,9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3행의 "C"을 "M"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행부터 제4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들이 2023. 9. 19.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국가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의 피대부자 지위를 원고에게 임의로 그대로 승계해 줄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대부자 지위를 승계해 주는 것까지 불가능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망인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 2022. 7. 29.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경작권을 같은 해 11. 27.까지 인정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잔금지급일 무렵에 곧바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용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덕

판사박만호

판사신안재

별지